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2





2022¹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지난 5월 31일까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총 345개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19년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2024년에는 5천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345개사 중 비금융사가 304개사, 금융사가 41개사이다. 그 외에 8개사가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에는 의무 공시 대상 215개사(비금융 175개사, 금융 40개사)와 그 외 12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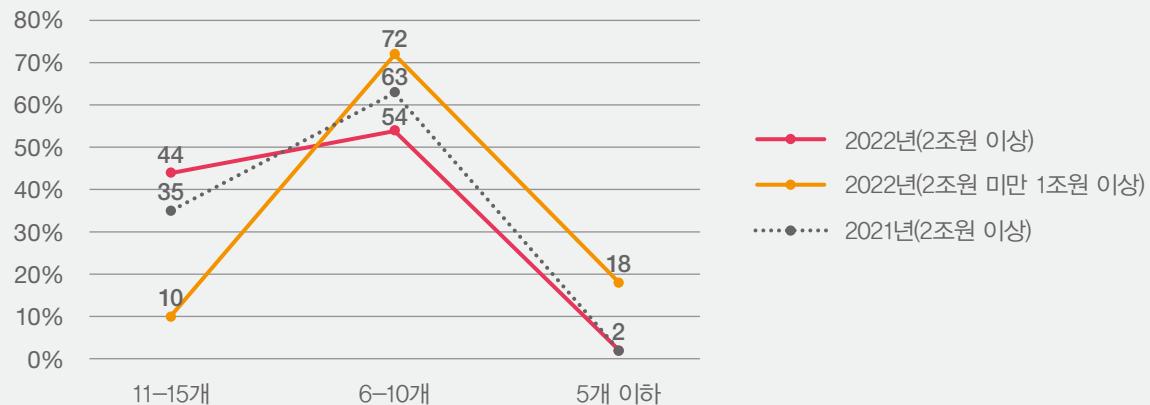
본고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목해야 할 추세와 시사점을 검토한다².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서, 본고는 분석을 위해 2021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에 첨부되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작성 기준시점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목을 '2022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으로 정하였다.

2 분석 대상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금융기업의 경우 '금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갈음한다.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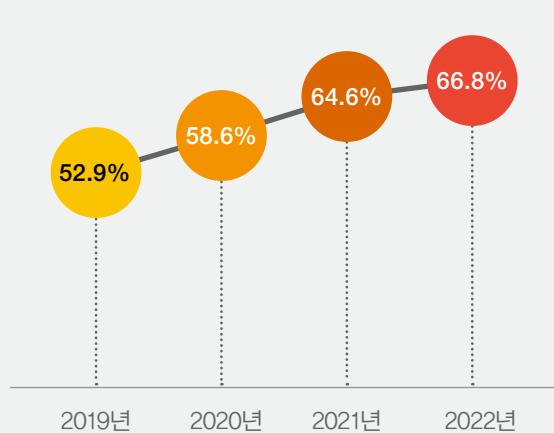
Key findings

① 준수 현황별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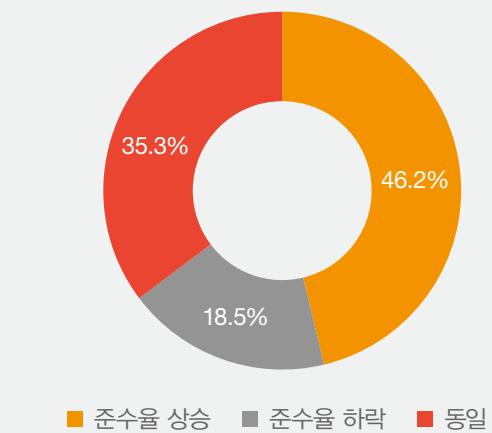


- 2조원 이상 기업 중 11개 이상 핵심지표를 준수한 기업 비율은 4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 중 11개 이상 핵심지표를 준수한 기업 비율은 10%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임

② 4년간 평균 준수율 추이 ^{2조원 이상}



③ 작년 대비 준수율 변화 ^{2조원 이상}



- 2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2022년(2021년)에 전년 대비 2.2%(6%)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조원 이상 기업 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준수율이 하락한 기업은 18.5%를 차지. 보다 강화된 개정 가이드라인의 준수 요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④ 준수율이 높은 지표 Top 4

- 장기재직 사외이사와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존재 여부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핵심지표 항목
100%	96%	⑯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9%	98%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³
97%	86%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⁴
97%	75%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3 장기재직 금지 요건을 정한 시행령 개정 전에 재임 중인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미준수로 표시될 수 있다.

4 내부감사기구로 감사가 설치되었다면 상법상 전문가 요건이 없다.

⑤ 준수율이 낮은 지표 Top 4

- 집중투표제의 채택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낮은 비율을 보임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핵심지표 항목
5%	1%	⑧ 집중투표제 채택
27%	12%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36%	10%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44%	18%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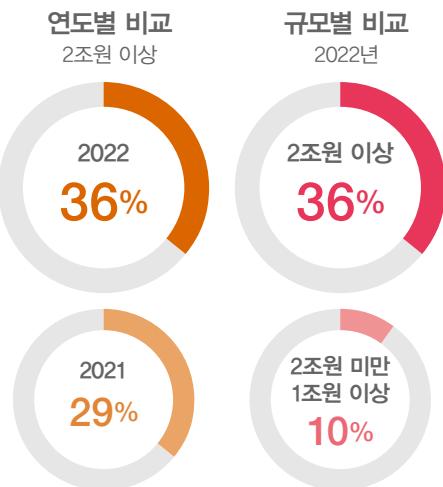
⑥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큰 항목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 공시가 첫 해인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2조원 이상 기업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조직 구조나 정책 및 절차를 바꾸어야 할 항목은 변화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부감사기구의 회의나 교육 등 실무적인 개선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준수율 차이	핵심지표 항목
42%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26%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22%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22%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20%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핵심지표에 비해 동 지표의 준수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⁵. 구체적인 미준수 사유로는 계열사 재무제표 확정 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일정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그럼에도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준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10%의 준수율을 보여 2조원 이상 기업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인력과 자원 면에서 제약 요인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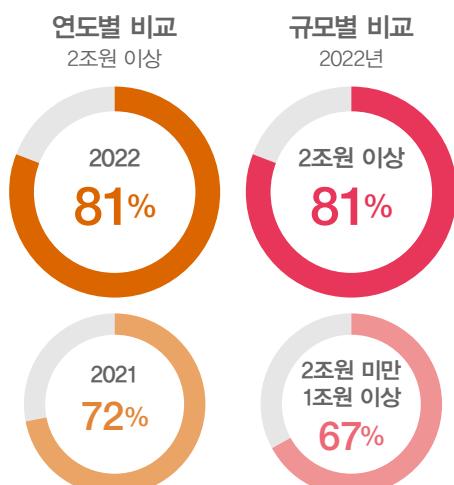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상법⁶은 기업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하므로, 법률 준수를 위한 기한인 2주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년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총 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되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⁷.

2.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은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기업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 2017년 셰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로 인해 정족수 미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상장회사 중 2022년 정기 주총에 전자투표 도입률은 62%로⁸,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5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58호 서식〉

6 상법 제363조제1항, 제542조의4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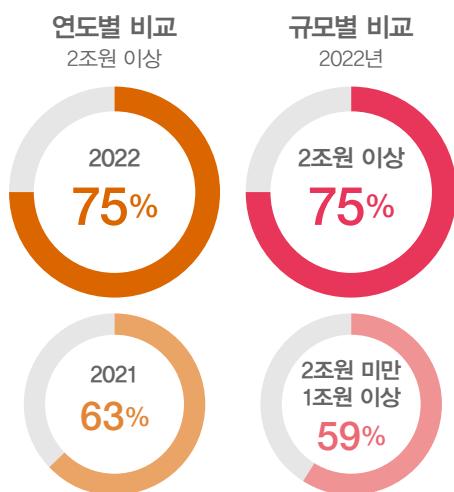
7 단,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8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22-5호, 주주총회 관련 제도 개선 효과 분석, 2022.6.8

3.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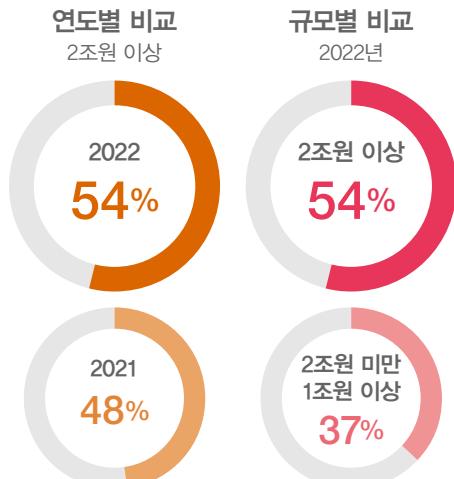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은 지난 2년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여기서 주주총회 집중일이라 함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은 주총 집중예상일을 연도별로 3개씩 선정하여 공지하고, 이를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협회에 통보한 기업에 인센티브(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를 부여한다. 반면,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예상집중일 3일간 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이 44.6%(2021년 49.8%, 2020년 52.9%, 2019년 49.3%)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회사 대부분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4월 이후 주주총회가 불가능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⁹.



4.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였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주주에게 부를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수익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여기서 배당정책이란 단순히 당기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기준과 방향을 의미하며, 배당실시 계획은 당기의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또한, 통지는 공시, 주주 개별통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IR,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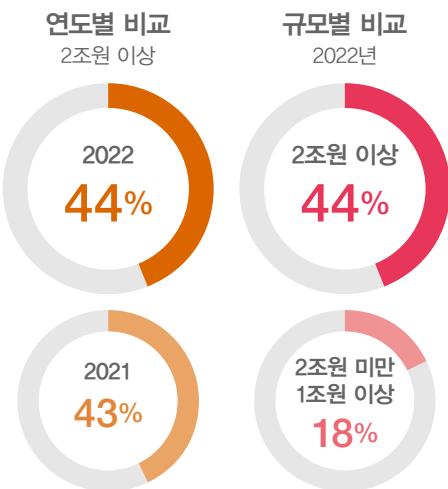
지난해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총액이 33.2조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를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0.3% 증가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은 529사로 전체 12월 결산 상장법인(769사) 중 약 69%를 차지하며,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도 전체 현금배당 법인의 78.4%에 해당한다¹⁰.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실제 배당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의 준수율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배당정보의 공시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9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22-5호, 주주총회 관련 제도 개선 효과 분석, 2022.6.8

10 한국거래소, 최근 5년간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1.4.22

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2019년 기준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2019년 준수율 67%, 2020년 준수율 52%). 이는 두 차례의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원칙 준수 요건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2020년 1차 개정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다 구체화되어, 단순히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의 준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집단)의 구성 또는 선정을 위한 기준, 교육, 평가, 정기적 개선보완 등이 실제 이행되는 경우에만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2년 2차 개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기업 규모별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18%의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최고 경영자 후보군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비상시 승계 절차에 관한 시스템은 구축 중이나,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 많았다.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현재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생소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단기간에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¹¹.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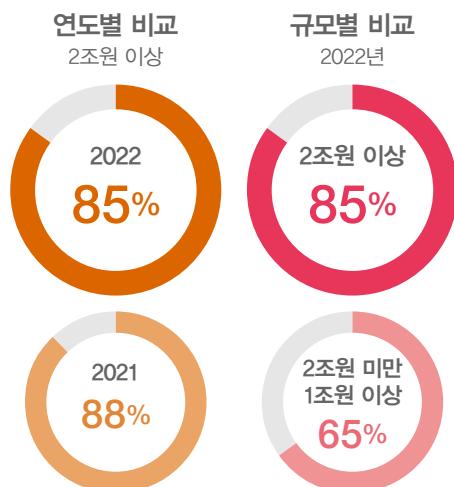
- (i)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 주체, (ii) 후보(집단) 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내용,
- (iii)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을 포함한 승계정책을 문서화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11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간행물 2. Excellence Series: CEO 승계 계획의 중요성과 모범사례 참조

6.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강조함에 따라, 동 지표의 준수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주된 미준수 사유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추후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정책 수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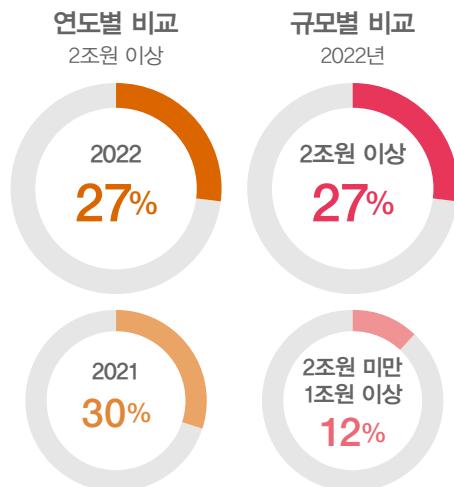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을 문서화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최선이 아닐 수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장되고 있다. 미준수한 사례 중에는 기업의 특성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고, 향후 분리를 위해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만약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선임 사외 이사를 두어 의장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미준수한 사례 중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의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충분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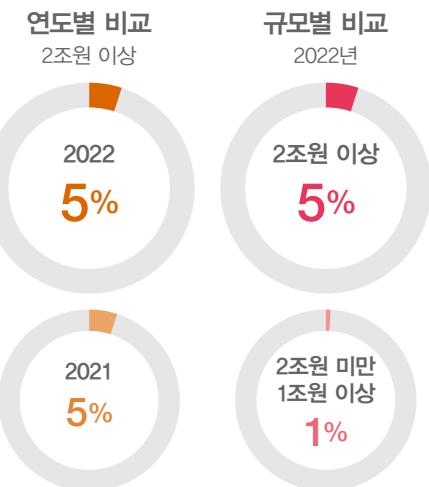


8.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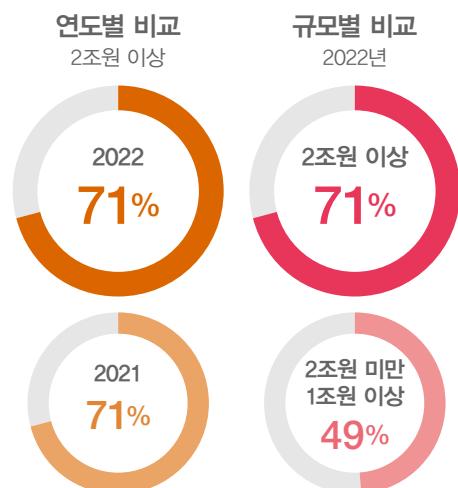
집중투표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¹³. 그리고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¹⁴.

집중투표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며,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제도이다. 많은 경우, 투기자본 세력 등이 이사회 및 기업 경영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미준수 사유를 제시하였다.



9. 기업가치 해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동 지표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동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임원의 현재 존재 여부가 아닌 이러한 임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기준 또는 절차의 수립 여부 및 실제 부존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범위에는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다.



12 상법 제382조의2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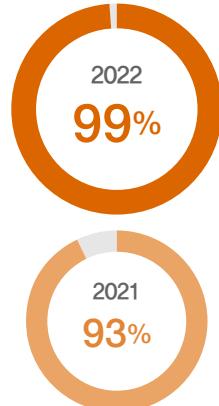
13 상법 제382조의2제3항

14 상법 제382조의2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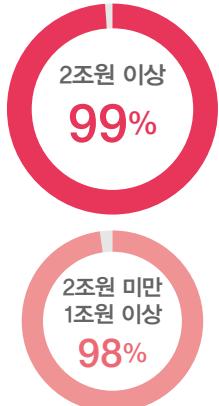
10.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없다.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기업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종전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기업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¹⁵. 시행령 개정 전에 재임 중인 장기 재직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100%의 준수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2021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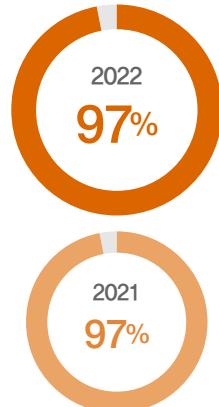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98%

감사기구

11.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97%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교육 주제 선정이나 실시 방식에 대한 실무가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조원 이상 기업과 비교할 때,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미준수 기업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현황 및 안건 내용의 설명과 질의응답만 진행했거나 관련 분야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2021
97%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75%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을 설명한 것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자료 제공은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연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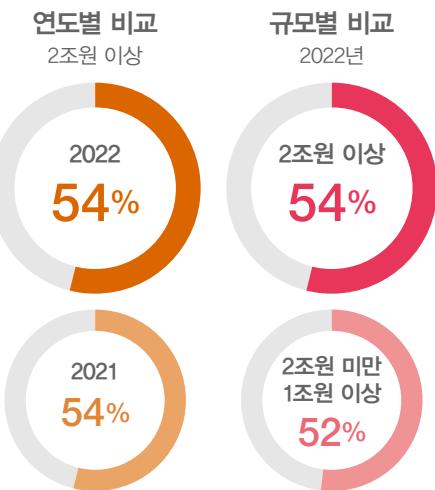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단순한 서면, 책자 등 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또는 화상 교육의 경우만 인정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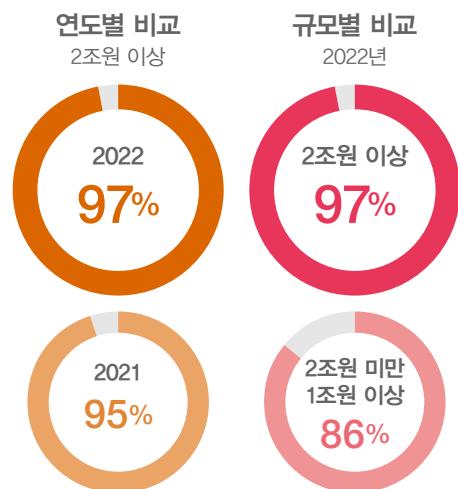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의 준수율이 가시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준수'에 대한 해석이 보다 엄격해진 데 기인한다. 2020년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독립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즉,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여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며,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준수 사유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담 부서는 있으나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고 경영지원실 소속 등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거나, 인사 관련 의사결정에 감사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 반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전담 부서가 없고 다른 업무 부서(법무, 회계, 전략기획 등)에 소속된 직원 중 지정된 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한다.

동 지표는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설치한 경우 상법은 별도의 전문가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사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미준수로 기재하였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모두 동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 설명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전년도에는 81%라는 높은 준수율을 보였으나, 2022년은 준수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2022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서면 보고는 제외되었으나, COVID-19로 인해 서면 회의로 대체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준수율이 하락한 이유로 풀이된다. 또한 동 지표는 자산 규모별 준수율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지표로, 차이가 약 42% 포인트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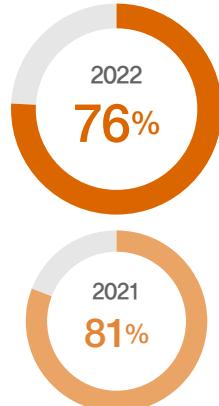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갖는 회의는 기업의 문화, 재무보고 이슈,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무적으로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업은 사전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도 일정 논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 회의에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예를 들어, 재무보고 관련 부서의 임직원)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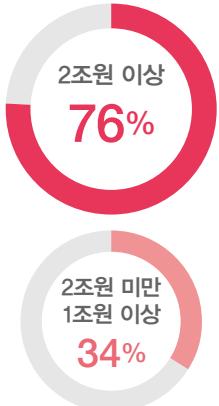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서면 보고 제외)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2021
81%

2021
81%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34%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모든 기업이 준수하였으며,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기업들의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 등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은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2021
100%

2021
100%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96%

별첨: 2022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지표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6%	10%
	② 전자투표 실시	81%	67%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75%	59%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54%	37%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4%	18%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5%	65%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7%	12%
	⑧ 집중투표제 채택	5%	1%
감사기구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1%	49%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9%	98%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	75%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4%	52%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7%	86%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76%	34%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00%	96%